



전시 A를가있는 사기가 아닌 결정

이름

주소 1

주소 2

도시.

주우편번호

발행 ID:

발송된 결정: 사회보장번호: 배치 번호.:

항소권리만료:

청구자 ID:

지역사무소: 고객콜센터

회의개최:

현재상황: 청구인(본인이 직접청구)

조사자:

감사통지:귀하의실업보험혜택에대한감사가이루어졌습니다.

조사결과: 9999 년 99월 99일부터 9999년 99월

99 일까지의기간동안귀하는<회사이름>와함께귀하의직업과수입에대하여올바르고정확하게보고하지못했습니다. 위원회증거자료 "A"를참조하십시오.

초과지불결정:위의이유로인해, 귀하는 N.C.Gen. Stat. \$96-18 (g) (2) 에 따라초과지불되었습니다. 이것은환불을요구하는통지입니다.

이결정의결과로초과지불 \$

\$ 초과지급 전 금액

이결정날짜이전에보상을받음 \$

\$ 요구되는환급의잔액

귀하의이름과사회보장번호의마지막네자리숫자를귀하의지불에포함시켜다음의주소로보

내주십시오: 노스 캐롤라이나 고용 안정 급여 지

불 통제 단위

우체국 상자 25903

Raleigh, NC 27611-5903

환불을위한조치가필요한경우, 노스캐롤라이나(North Carolina)주의 Raleigh 에 있는본부사무실(Central Office) 부서에 919.707.1338 로전화하십시오.

> UI 사기를 예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des.nc.gov에서 UI 사기로 의심되는 항목 게시 사무실 상자 25903 Raleigh, 노스 캐롤라이나 27611-5903



noticeld

항소권리:

항소권리 만료일 이전에 불만이 제기된 당사자의 이의제기가 없는한 이결정은 최종적입니다. 이항소는 https://des.nc.gov의포털에 로그인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할수있으며 메일로 고용안전부항소부서, 노스캐롤라이나 (North Carolina) 의 Raleigh, NC 27611-5903 에있는우체국사서함 25903 로보내거나; 팩스번호 919.857.1296 에보낼수있습니다. 추가정보는동봉된항소자료및신문자료팸플릿을참조하십시오.

중요공지사항:이결정에의해초과지불이생성된경우고용안전부의급여무결성 / 급여지불조종부서로 부터초과지급통지가우편으로발송됩니다.

이문서는다른것들중에서도초과지급액과적용가능한처벌을명시합니다.

초과지불에이의를제기할수있는유일한방법은노스캐롤라이나법률및고용안전부규정에따라이결정및초과지불결 과에항소하는것입니다. 급여를받으려는청구자가이의제기를취소한경우,

수령한급여는해당부서에상환해야하는초과지급금액이됩니다. 이법은 "어떤이유로든"

자격이없는급여를수령한모든사람들이임의의부서또는사법적준위에서결정이항소로취소된경우를포함하여수령 한급여를상환해야할의무가있음을요구합니다. N.C. Gen. Stat. \$96-18(g)(2).

급여의 화불

어떤이유로든 (부서의대리인의실수를포함), 귀하는제 96 장에따라귀하에게자격이부여되지않은급여로금액을지급받았을경우, 귀하는그금액을 N.C Gen. Stat. §96-18(g)(2) 의부서에환불해야합니다.

초과지급금액회수

N.C. Gen. Stat. § 96-18 (g) (3) 에따라부서는다음중하나이상의절차를 수행하여초과지급금액을징수할수있습니다:

- 1. 지불해야할초과지급금액은부서의이름으로민사소송으로징수할수있으며그러한조치의비용은귀하에게과세됩니다.
- 2. 통지가있은후 30 일이내에초과지급금액이상환되지않고동일한요구가접수된경우, 부서는귀하가거주하거나재산을가지고있는주의법원서기에게같은내용을확인하고해당주에있는귀하의재산 에대한판결이결정될것입니다.
- 3. 초과지급액은제 96 장에의거하여귀하에게지급될앞으로의급여로부터공제될수있습니다.

초과지급액이충족될때까지또는귀하의수급권이소진될때까지주간수당액의최대 (50 %)를공제할수있습니다.

초과지급금액의포기

N.C. Gen. Stat. § 96-4(s)가 제공한것에의해, 부서는합당한사유가있으면 N.C. Gen. Stat. § 96-18(g)(2) 에따라발생하는초과지급금액의전부혹은일부를면재할수있습니다.

초과급여혜택을받은것으로밝혀진개인은초과지불을면제하기위해부서에청원할수있습니다.청원서제출의내용과절차는고용안전부의규정 20A 및 20B 에의해규정되며, 이는고용안전부의법률서비스부서(전화번호 919.707.1025) 에연락하여문의할수있습니다.

고용의종료

부서에지불해야할금액을모두환불한해당주정부또는특정지방교육기관의직원으로서비영리공무원또는입법자는지속적으로고용되어야합니다.의무의서면통지가제공될것입니다. 합리적인기간후에의무가시작되지않은경우, 행정기관이나사법기관의구제조치가취해지지않는한고용기관은고용종료절차를밟아야합니다.N.C. Gen. Stat. §143-5553.



전시 A를가없는 사기가 아닌 결정

발행 ID::

발송된 결정: 사회보장번 호:XXX-XX-XXX박쥐.XXX-

XX 항소권리만료:

청구자 ID:

이름

주소 1

주소 2

도시, 주, 우편번호

지역사무소: 고객 콜센터 회의개최: 2015 년 08 월 29 일 현재상황: 청구인(본인이 직접청구)

조사자: Susan Doe

감사통지:귀하의실업보험급여청구에대한감사가이루어졌습니다.

조사결과: 9999 년 99 월 99 일부터 9999 년 99 월 25 일까지의기간동안귀하는<회사이름>와함께귀하의직업과수입에대하여올바르고정확하게보고하지못했습니다. 초과지불결정:위의이유로인해, 귀하는 N.C.Gen. Stat. \$96-18 (g) (2) 에 따라서초과지불되었습니다. 이것은환불을요구하는통지입니다.

\$000.00 이결정의결과로초과지불

\$0 초과지급 전 금액

\$() 이결정날짜이전에보상을받음

\$000.00

요구되는화급의잔액

귀하의이름과사회보장번호의마지막네자리숫자를귀하의지불에포함시켜다음의주소로보내주십시오:

노스 캐롤라이나 고용 안정 급여 지불 통제 단위 우체국 상자 25903 Raleigh, NC 27611-5903

환불을위한조치가필요한경우, 노스캐롤라이나(North Carolina)주 Raleigh 에 있는 본부사무실(Central Office) 부서에 919.707.1338 로전화하십시오.

UI 사기를 예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des.nc.gov에서 UI 사기로 의심되는 항목 게시 사무실 상자 25903 Raleigh, 노스 캐롤라이나 27611-5903



noticeld

항소권리:

항소권리만료일이전에불만이제기된당사자의이의제기가제기되지않는한이결정은최종적입니다. 이항소는 des.nc.gov 의포털에로그인하여온라인으로제출할수있으며메일로고용안전부항소부서,노스캐롤라이나 (North Carolina) 의 Raleigh, NC 27611-5903 에있는우체국사서함 25903 로보내거나; 팩스번호 919.857.1296 에보낼수있습니다. 추가정보는동봉된항소자료및신문자료팸플릿을참조하십시오.

중요공지사항:이결정에의해초과지불이생성된경우고용안전부의급여무결성 / 급여지불조종부서로 부터초과지급통지가우편으로발송됩니다.

이문서는다른것들중에서도초과지급액과적용가능한처벌을명시합니다.

초과지불에이의를제기할수있는유일한방법은노스캐롤라이나법률및고용안전부규정에따라이결정및초과지불결 과에항소하는것입니다. 급여를받으려는청구자가이의제기를취소한경우,

수령한급여는해당부서에상환해야하는초과지급금액이됩니다. 이법은"어떤이유로든"

자격이없는급여를수령한모든사람들이임의의부서또는사법적준위에서결정이항소로취소된경우를포함하여수령한급여를상환해야할의무가있음을요구합니다. N.C. Gen. Stat. §96-18(g)(2).

급여의 환불

어떤이유로든 (부서의대리인의실수를포함하여),귀하는제 96 장에따라귀하에게자격이부여되지않은급여로금액을지급받았을경우, 귀하는그금액을 N.C Gen. Stat. §96-18(g)(2) 의부서에환불해야합니다.

초과지급금액회수

N.C. Gen. Stat. \$ 96-18 (g) (3) 에따라부서는다음중하나이상의절차를 수행하여초과지급금액을징수할수있습니다:

- 4. 지불해야할초과지급금액은부서의이름으로민사소송으로징수할수있으며그러한조치의비용은귀하에게과세 됩니다.
- 5. 통지가있은후 30 일이내에초과지급금액이상환되지않고동일한요구가접수된경우, 부서는귀하가거주하거나재산을가지고있는주의법원서기에게같은내용을확인하고해당주에있는귀하의재산 에대한판결이결정될것입니다.
- 6. 초과지급액은제 96 장에의거하여귀하에게지급될앞으로의급여로부터공제될수있습니다.

초과지급액이충족될때까지또는귀하의수급권이소진될때까지주간수당액의최대 (50 %)를공제할수있습니다.

초과지급금액의포기

N.C. Gen. Stat. § 96-4(s)에서제공한것에의해, 부서는합당한사유가있으면 N.C. Gen. Stat. § 96-18(g)(2)에따라발생하는초과지급금액의전부혹은일부를면재할수있습니다.

초과급여혜택을받은것으로밝혀진개인은초과지급을면제하기위해부서에청원할수있습니다.청원서제출의내용과절차는고용안전부의규정 20A 및 20B 에의해규정되며, 이는고용안전부의법률서비스부서(전화번호 919.707.1025) 에연락하여문의할수있습니다.

고용의종료

부서에지불해야할금액을모두환불한이주또는특정지방교육기관의직원으로서비영리공무원또는입법자는지속적으로고용되어야합니다.의무의서면통지가제공될것입니다. 합리적인기간후에의무가시작되지않은경우, 행정기관이나사법기관의구제조치가취해지지않는한고용기관은고용종료절차를밟아야합니다.N.C. Gen. Stat. \$143-5553.



Exhibit A가 포함 된 결정 사기

사기결정 :귀하는 N.C. Gen. Stat \$96-18 (e) 에따라 9999 년 99 월 99 일에서 0000 년 99 월 99 일까지 9 년간급여을받을자격이없습니다.

이유 :당신은실업보험급여을청구하면서의도적으로거짓진술을하거나중요한사실을공개하지않았습니다. 9999 년 99 월 99 일에서 9999년

05월 02일까지의기간동안<**회사이름**>과함께귀하의업무와수입을적절하고올바르게보고하지못했습니다.자세한 내용은부서의증거자료 "A"의첨부사본을참조하십시오.

\$0000.00 이결정의결과로초과지불

\$000.00 사기초과지불에대한처벌

\$0 초과지불이전금액

\$() 이결정날짜이전에보상을받음

\$0000.00 요구되는환급의잔액

귀하의이름과사회보장번호의마지막네자리숫자를귀하의결제에포함시켜다음의주소로보

내주십시오: NC Division of Employment Security

Benefit Payment Control Unit Post Office Box25903 Raleigh, NC27611-5903

환불을위한조치가필요한경우, 노스캐롤라이나(North Carolina)주 Raleigh 에 있는본부사무실(Central Office) 부서에 919.707.1338 로전화하십시오.

항소권리:

항소권리만료일이전에불만이제기된당사자의이의제기가제기되지않는한이결정은최종적입니다. 이항소는 des.nc.gov 의포털에로그인하여온라인으로제출할수있으며메일로고용안전부항소부서,노스캐롤라이나(North Carolina)의 Raleigh, 27611-5903 에있는우체국사서함 25903 로보내거나; 팩스번호 919.857.1296 에보낼수있습니다. 추가정보는동봉된항소자료및신문자료팪플릿을참조하십시오.

중요공지사항:이결정에의해초과지불이생성된경우고용안전부의급여무결성 / 급여지불조종부서로 부터초과지급통지가우편으로발송됩니다.

이문서는다른것들중에서도초과지급액과적용가능한처벌을명시합니다.

초과지불에이의를제기할수있는유일한방법은노스캐롤라이나법률및고용안전부규정에따라이결정및초과지불결 과에항소하는것입니다. 급여를받으려는청구자가이의제기를취소한경우,

수령한급여는해당부서에상환해야하는초과지급금액이됩니다. 이법은 "어떤이유로든"

자격이없는급여를수령한모든사람들이임의의부서또는사법적준위에서결정이항소로취소된경우를포함하여수령한급여를상환해야할의무가있음을요구합니다. N.C. Gen. Stat. §96-18(g)(2).

처벌

당신또는당신을대신하거나당신에대하여알고있는다른사람이고의로속이거나또는허위진술을한것으로판명된경우, 또는제 96 장에따르는급여또는기타지불을얻거나증가시키기위해고의적으로중요한사실을공개하지않은경우, 당신은다음과같은처벌을받을수있습니다.

BAM0001 Page5of4



noticeld

형사고발

-- 9999 년 99 월 99 일이전주 -제 9999 장또는기타주, 연방정부또는외국정부의고용안정법에따라급여을얻거나 증가시키기위해중대한사실을공개하지않은거짓진술또는허위진술은각각경범죄가됩니다. 이범죄는벌금및 / 또는투옥의대상이됩니다. N.C.Gen. Stat. § 96-18 (a).

--2012 년 12 월 1 일이후의주 -제 96 장또는기타주,

연방정부또는외국정부의고용안정법에따라급여을얻거나증가시키기위해중대한사실을공개하지않은각거짓진술또는허위진술은상기금액이 \$ 000.00 를초과하는경우중범죄로됩니다.이범죄는벌금및 / 또는투옥의대상이됩니다.N.C. Gen. Stat. § 96-18 (a).

급여의환불

제 96 장에따라사기행위또는태만그리고자격이없을때에는수령한모든급여를부서에상환할책임이있습니다. N.C. Gen. Stat. § 96-18 (g)(2).

연방정부의형벌

연방법은연방기금을포함하는청구에대하여고의적허위진술을통해실업수당을얻은데대해서는추가로심각한형벌을부과합니다. 위반자에게는 \$ 1,000 (천달러)에서 \$ 10,000

(만달러)까지의최대벌금및징역형이적용될수있습니다.2013 년 10 월 1

일부터초과지급금액에대한사기결정에는초과지급액의 15 %에해당하는벌금이부과됩니다. N.C. Gen. Stat. § 96-18 (h).

초과지급금액회수

N.C. Gen. Stat. § 96-18 (g) (3) 에따라부서는다음중하나이상의절차를 수행하여초과지급금액을징수할수있습니다:

- 1. 지불해야할초과지급금액은부서의이름으로민사소송으로징수할수있으며그러한조치의비용은귀하에 게과세됩니다.
- 2. 통지가있은후 30 일이내에초과지급금액이상환되지않고동일한요구가접수된경우, 부서는귀하가거주하거나재산을가지고있는주의법원서기에게같은내용을확인하고해당주에있는귀 하의재산에대한판결이결정될것입니다.
- 3. 초과지급액은제 96 장에의거하여귀하에게지급될앞으로의급여로부터공제될수있습니다.

고용의종료

부서에지불해야할금액을모두환불한이주또는특정지방교육기관의직원으로서비영리공무원또는입법자는지속적으로고용되어야합니다.의무의서면통지가제공될것입니다. 합리적인기간후에의무가시작되지않은경우, 행정기관이나사법기관의구제조치가취해지지않는한고용기관은고용종료절차를밟아야합니다.N.C. Gen. Stat. §143-5553.

BAM0001 Page6of4



noticeld

결정은 직업검색입니다.

결정

청구자는 2015 년 08 월 16 일부터 2015 년 08 월 22 일까지급여를받을수없습니다.

이유

청구인은 2015 년 07 월 12 일에발효되여 2015 년 08 월 29 일까지지속된국민소득위원회(NIC) 청구에실패했습니다.

<날짜>로끝나는주동안청구자의직업검색은 4 개의직업검색연락처로구성되었습니다: <직업검색목록>.

<연락처목록>에있는직업검색연락처는현존되지 않는 품질관리조사관에따라다릅니다 청구인은일주일에최소두명의연락처담당자를만나지않았기때문에직업검색요구사항을충족하지못했습니다. 청구인은<날짜>에대한요구사항을알고있었습니다.

결론

N.C. Gen. Stat. § 96-13 (a) (3)

은실업자가적극적으로직업을찾고있다고부서에서인정한경우에만혜택을받을수있는자격을부여합니다.

앞서언급한바에기초하여,청구자가활동을하지않았다고결론지었습니다.

직업검색. 항소권리:

항소권리만료일이전에불만이제기된당사자의이의제기가없는한이결정은최종적입니다.

이항소는 https://des.nc.gov 의포털에로그인하여온라인으로제출할수있으며메일로고용안전부항소부서,노스 캐롤라이나 (North Carolina) 의 Raleigh 에있는우체국사서함 25903 로보내거나; 팩스번호 919.857.1296 에보낼수있습니다. 추가정보는동봉된항소자료및신문자료팸플릿을참조하십시오.

중요공지사항:이결정에의해초과지불이생성된경우고용안전부의급여무결성 / 급여지불조종부서로 부터초과지급통지가우편으로발송됩니다.

이문서는다른것들중에서도초과지급액과적용가능한처벌을명시합니다.

초과지불에이의를제기할수있는유일한방법은노스캐롤라이나법률및고용안전부규정에따라이결정및초과지불 결과에항소하는것입니다. 급여를받으려는청구자가이의제기를취소한경우,

수령하급여는해당부서에상화해야하는초과지급금액이됩니다. 이법은"어떤이유로든"

자격이없는급여를수령한모든사람들이임의의부서또는사법적준위에서결정이항소로취소된경우를포함하여수 령한급여를상환해야할의무가있음을요구합니다. N.C. Gen. Stat. \$96-18(g)(2).

BAM0001 Page7of4